

제329회 임시회
교 통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5. 4

서울특별시의회

정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은평4)

□ 존경하는 이병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
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,

매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

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

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

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동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자가 공공자전거 대여 시

서울공공자전거앱에서

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통행원칙과

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

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

의무사항으로 규정해

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

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- 이를 위해 안 제2조제7호에
‘서울공공자전거 앱’에 대해 정의하였으며,
안 제12조의2제4항에 공공자전거 앱의
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내 의무화 규정을
신설했습니다.

- 또한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
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
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,
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고
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